

2001. 11. 23(금)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 경과

-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1. 11. 16 제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01. 11. 16
다. 상정일자 : 2001. 11.22(제75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회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건설과장 이종식)

가. 제안이유

-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에 관한 규정중 행정편의적인 일부내용을 주민편의적으로 완화하고자 관련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현행조례상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소하천 정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 시장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반환하도록 규정된 것을, 허가 취소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하는 기간분의 점용료등은 일할계산하여 반환하도록 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종철)

가. 법적인 검토

- 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이며,

- 행정절차법 제41조내지제43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게재하여 입법 예고기간(2001. 10. 4 ~ 10. 24)을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9규정에 의거 2001. 11. 13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사료됨.

나. 행정적인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편의적인 일부내용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2001. 9. 5 제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주민 편의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 없 음 ”

5. 소수 의견

“ 없 음 ”

6. 토론 요지

“ 없 음 ”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8. 심사보고 붙임서류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